

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	2004. 1.
제출자	보건소장

개정이유

- 2003. 10. 1일 거창군 직제개편에 따라 위생담당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위원 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보건소장”으로 변경함 (안 제4조)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군수방침 (2003. 10. 1일자 거창군 직제개편 관련)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보건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운영위원회 구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<u>사회복지과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~ 3.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운영위원회 구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<u>보건소장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